

kiri

2011.11.24 제4호

Weekly Focus

포커스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해외금융 뉴스

슈퍼위원회,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 실패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주간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송윤아 연구위원

요약

■ FY2010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총 495명이고 관련 적발금액은 약 95억 원이며 모집종사자의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모집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구성이 가능하며, 이는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범죄의 적발을 더욱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보험사기를 구성한 모집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태백시 보험설계사 70여 명, 주민 300여 명, 3개 병원이 공모하여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150여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¹⁾

● 태백사건에서 병원은 가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요양급여비와 입원치료비를 받고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와 병원을 연결시켜주고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수법을 알려주면서 보험 가입 수수료를 챙김.

■ 가계성 보험의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 모집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모집종사자와 관련된 보험범죄가 발생할 여지가 큼.

● 모집종사자는 일반인보다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특성 및 지급심사절차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구성이 가능하고, 이는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범죄의 적발을 어렵게 함.

1) 연합뉴스(2011. 11. 4), 「법·도덕 실종 보여준 태백 보험사기」.

- 또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계약자들의 고지의무 위반을 조장하기도 하며, 사고 발생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사고처리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과정에서 보험범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음.
- 모집종사자의 보험범죄는 다발적으로 반복 발생하여 규모가 크고 범죤연루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 FY2010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는 총 495명이고 관련 적발금액은 약 95억 원이며 모집종사자의 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비교적 높은 편임.

- FY2010 보험사기 적발자수는 총 54,994명이고, 적발금액은 약 3,500억 원으로, 이중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을 포함한 모집종사자는 적발자수 기준으로 0.9%, 적발금액 기준 2.7%를 차지함.
- 모집종사자의 1인당 평균적발금액은 약 1,930만 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적발금액(630만 원)보다 약 세 배가 높음.

〈표 1〉 FY2010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	1인당 평균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비율	
모집종사자	보험설계사	403	7,300	18.1	0.7%	2.1%
	대리점	92	2,230	24.2	0.2%	0.6%
	소계	495	9,530	19.3	0.9%	2.7%
병원	423	5,100	12.1	0.8%	1.5%	
정비업소	408	2,450	6.0	0.7%	0.7%	
기타	53,668	330,020	6.1	97.6%	95.1%	
합계	54,994	347,100	6.3	10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0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약 58%는 보험소비자 또는 병·의원과 공모하여 사고 내용을 조작·가공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연루되었음.

- FY2010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중 허위사고, 피해과장, 고의사고유발 관련 적발금액은 각각 16억 4,000만 원, 15억 2,000만 원, 34억 원에 이룸.

〈표 2〉 FY2010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형(적발건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백만 원)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허위사고	146	1,640	29.5%	17.2%
피해과장	140	1,520	28.3%	15.9%
보험계약조작	64	578	12.9%	6.1%
고의사고 유발	66	3,400	13.3%	35.7%
기타	79	2,392	16.0%	25.1%
합계	495	9,530	100.0%	100.0%

주: 보험계약조작이란 보험가입을 위해 중대질병 또는 장애를 숨기거나 대리진단 또는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사기유형을 이룸.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0 보험 종목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에 연루된 모집종사자수는 359명으로 적발 모집종사자수의 73%를 차지하는 반면, 적발금액은 40억 원으로 43%에 불과함.

〈표 3〉 FY2010 보험종목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적발자수	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자동차보험	236	1,810	47.7%	19.0%
장기보험	123	2,220	24.8%	23.3%
생명보험 질병보장	73	1,400	14.7%	14.7%
기타	63	4,100	12.7%	43.0%
합계	495	9,530	10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 FY2010 적발된 모집종사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255명으로 여자보다 15명 더 많고,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의 경우 남자가 2,180만 원으로 여자보다 530만 원 더 많음.

〈표 4〉 FY2010 모집종사자의 성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모집종사자 성별	적발자수	적발금액	인당 평균적발금액	적발자수 비율	적발금액 비율
남	255	5,560	21.8	51.5%	58.3%
여	240	3,970	16.5	48.5%	41.7%
합계	495	9,530	19.3	100.0%	100.0%

자료: 금융감독원.

■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발생 규모도 크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유인 제거가 불가피함.

- 구체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모집종사자의 등록 제한 및 취소가 이뤄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제102조 2항에 기술된 ‘보험사기’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동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동법에 삽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
 - 현행 법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등을 받은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84조와 제86조).
 - 반면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 금지조항(제102조 2항)만 있고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됨. **kiri**